의 안 번 호	제 49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가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9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「지방자치법」제32조의2 → 제34조(안 제1조)「동법시행령」제15조의3 → 제35조(안 제1조)
 - 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15조 → 제33조 (안 제2조)
- 나.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
 - 1) 00조의 규정에 의한 → 00조에 따른
 - 2) 00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00조에 따라
 - 3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34조,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33조ㆍ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"로 한다.
- 제2조제1호 중 " "직무"라 함은"을 " "직무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 "의정활동비"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"을 " "의정활동비"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 "유족"이라 함은"을 " "유족"이란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 "장애"라 함은"을 " "장애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 "상해"라 함은"을 " "상해"란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각호의 1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 및 제10조 본문 중 "각호"를 각각 "각 호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접수	제	호		의원	상해	등 !	로 싱	남금	청구	구서		처리기간
보상다	개상의원	성	玛					주민등 ^호 헌 호				
		성	玛					주민등 컨 호				
처 .	구 자	주	소								Ž	전 화 번 호
6	1 4	청-	구내용	□ 사	망	□ 장	Ó	A		상 해		
		수	상 금 령 당기관				- 항]점		계	좌번호		
상 병] 장 소							상	병연윝	일의		
	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											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							
					년 청구	선		(1) 0		는 서명)		
첨부서류 : 1. 사망의 경우 : 호적등본 1부,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 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, 장애, 상해 공통)												
상기 자는 「지방자치법」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		
거창군 의회의장 (직 인) 거 창 군 수 귀 하												

(별지 제2호서식)

접	제	ই	이으	[상해 등 5	ᅪᅩ	처그 시	이겨기	처 리 :	기 간
수			- AE	! 341 5 -		ат а	의일의		
보상대	개상의원	성 명				주민등록 번 호			
	상 금 ¹ 내 용	□ 사	망	□ 장 애		□ 상	해		
상해 <i>/</i> 및 <i>-</i>	· 장애· 나실 여부 상태 등 조사 내용								
		〈결 >	정〉						
심	의 회	〈결정이유〉							
심 의 결 과 〈심의위원 서명〉									
	 창군의회의 같이 심의			시급에 관한 조례	제13조 🤊	제3항의 규정	성에 의하여		
				년	월	일			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(인)									
거	창 군	수 귀	하						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(이하	제1조(목적)
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	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
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	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
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	
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에 대한	
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	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의정활동비"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	2. "의정활동비"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
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.	활동비를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
상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<u>각 호</u>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<u>각호</u> 의 "직무"에 대한 구체적 인	② <u>각호</u>
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"공무상재해인정	
기준"에 준한다.	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	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
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<u>각 호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	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
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	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
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	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
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	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
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	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
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	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
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<u>로 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"장애"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제45조에 규정된 "폐질등급"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"상해"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<u>각 호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. 1. ~ 4. (생략) ③ (생략)	
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	제10조(심의회 기능) <u>각 호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4조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-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-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-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 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,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없다.

-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,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 쳐야 한다.
-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